

수강포기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내규 제20조 2(수강신청 포기)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강포기제는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에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및 시기) ① 당해학기 등록 후 아래 표와 같이 최소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으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학번 기준	수강신청 학점	
	최소수강신청학점	최대수강신청학점
2012학번까지	18학점이상(4학년 1학기 15학점, 2학기 9학점)	22학점까지
2013학번부터	17학점이상(4학년 1학기 13학점, 2학기 7학점)	20학점까지

② 수강포기 신청은 학기별 수업일수 1/3선 이전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포기 학점) 학점포기 가능 학점은 학기당 6학점(2과목)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에는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포기 제외교과과목) 아래의 교과과목에 대하여는 수강포기를 할 수 없다.

- ① 학과지정특별과목 및 현장실습과목
- ② (삭제)
- ③ 기타 재수강 과목 등

제6조(유의사항) ① 수강포기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으로 추가수강 신청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수강포기 후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학점에 미달될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 된다.

③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학점등록 대상자)

④ 수강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등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최초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⑤ 수강포기로 인하여 해당강좌가 폐강기준에 달할 시에는 수강을 포기할 수

없다.

⑥ 수강포기가 승인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

수강포기원

* 해당 과에 √ 표시해주시요. (학년도 학기)

☐ 학 부	과	학 년	학번		성명	
☐ 신 대 원						
교 과 목 명		과목코드	학점	담당 교수명	비고	
취소사유(구체적으로)						
연락처(휴대폰)						
위와 같이 수강신청 과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대신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1. 수강 포기 과목은 학기당 2과목 이내로 한다.
2. 수강을 포기한 과목에 대해 추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ex, 졸업학점 미달, 학년별 필수 과목 시간중복, 수료학점 미달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결	계	담당	주임	팀장	교무처장
재					